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DC

SHINHAN
INVESTMENT
CORP.

Professional-Shinhan

세상에 프로는 많습니다.

하지만, 책임감 있는 프로는 많지 않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런 프로를 진정한 프로라 합니다.

책임감 있는 진정한 프로들의 회사, 신한금융투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기업명 기재

(이하 "위탁자"라 합니다)와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퇴직연금사업자 등록번호 제05-030-2호, 이하 "수탁자"라 합니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및 위탁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실시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이 제도"라 합니다)의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합니다.

제1조 (신탁의 목적)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사용자가 재계약하지 않는 취지를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해 상대방에 대해서 통지하지 않는 한, 변경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로서 이 계약의 위탁자를 말합니다.
 - "기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로서 이 계약의 수탁자를 말합니다.
 -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5. "자산관리계약"이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6. "급여"라 함은 기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7. "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8. "적립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이 제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하나의 운용관리기관 및 복수의 자산관리기관과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자산관리기관 간에 금전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적립금 이전"이라 함은 사용자가 이 제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하나의 운용관리기관 및 복수의 자산관리기관과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자산관리기관 간에 금전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부당금"이라 함은 기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당금과 기입자의 선택에 따라 기입자가 납입한 부당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규약(이 계약에서 "규약"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자산관리업무)

이 계약에 의해 수탁자가 수행하는 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로 합니다.

- 계좌의 설정 및 관리
- 부당금의 수령
-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시의 이행
- 급여의 지급
-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업무

제4조 (신탁계약의 체결 및 신탁금)

- 위탁자는 이 계약서의 작성 및 금전의 신탁을 통해 이 계약을 체결하며, 이 신탁의 계약체결일 이후에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전을 추가로 신탁하기로 합니다.
-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외에 기준퇴직금 사내우보금의 이전, 퇴직일시금신탁(퇴직보험 포함)으로부터의 계약이전,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의 계약이전 또는 급여이전 등으로 이전되는 금전을 수탁받을 수 있습니다.

제5조 (신탁기간)

이 계약의 신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도지지일,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신탁계약의 전부이 전일 제2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종료일까지로 합니다.

제6조 (수의자)

- 이 신탁의 원본 및 이의의 수의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기업자 또는 기업자이었던 자로서 이 신탁자산에 대한 지분이 있는 자로 합니다.
- 수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업자별 적립금액 및 기타 수의자에 관련된 사항은 운용관리기관이 관리합니다.

제7조 (신탁관리인)

- 신탁관리인은 수의자를 대표하며 수의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신탁에 관한 자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탁관리인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로 합니다.
 - 수의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
 - 수의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수의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자
- 위탁자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 등 위탁자측은 신탁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위탁자는 신탁관리인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새로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여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 계약의 체결시 신탁관리인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1조 제2항에 의해 수탁자가 사용하거나 제20조에 의해 위탁자기자산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는 자체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탁관리인을 선임하여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탁관리인 부자로 인해 수의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수의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8조 (연금규약의 제출 및 변경)

- 위탁자는 수탁자가 자산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 신고·수리된 연금규약(별지) 및 노동부의 신고·수리 확인서류를 이 계약 체결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금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자는 변경할 내용을 수탁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변경 후에는 자체 없이 변경된 내용의 통지와 함께 변경된 연금규약을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사실의 통지지연 및 연금규약의 제출지연에 대한 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제9조 (운용관리기관의 통지)

- 위탁자는 운용관리기관과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그 내용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운용관리기관이 변경·취소되었을 경우에 그 내용을 즉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수탁자는 제1항의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금에 관한 시장·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탁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금의 자금에 관한 사항·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제공 및 중도이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통지·운용사지·확인(이하 "통지 등"이라 합니다)을 받아야함을 수행합니다.
- 제2항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수탁자와 운용관리기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합니다.

제10조 (신탁자산의 운용)

- 신탁자산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은 관행법령 및 연금규약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의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수의자가 신탁자산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운용관리기관에 통보하면 운용관리기관은 수의자를 수탁자에게 전달하고 수탁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한 운용자체에 따라 신탁자산을 운용합니다.
- 신탁자산에 속하는 금전으로서 제1항의 운용시각이 없는 금전 중 지급 또는 운용을 위해 기자증인자금 및 수수료로 자산처김에 따라 발생하는 전야자금에 대해서는 부속정지서에서 정한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수탁자는 이 신탁자산을 다른 신탁자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합니다.

제11조 (원본과 이의의 보전)

이 신탁은 원본과 이의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신탁자산의 예탁 및 보관)

수탁자는 신트자산 중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예탁결제원등에 예탁 및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신탁금의 지급)

- ①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운용자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급여의 지급은 기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서 운용관리기관 및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기업자의 운용자시가 지연되어 신탁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회사의 구체적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기업자의 중도인출 시유가 발생할 경우, 운용관리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탁금을 매각하여 기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신탁 계약을 이전하거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등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급여에 전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이를 수행합니다.
- ⑤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이 기업자로부터 징수할 수수료를 신탁자산에서 차감하여 운용관리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⑥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은 투자소득세 등 신탁금 지급과 관련한 제세금 징수절차가 원료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 ⑦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 약관에서 "지급기일"이라 하며,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적립금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지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실제 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지급기일 시점에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대하여 보상합니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 신탁금 지급의 연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구체적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7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신탁원본)

이 신트에 있어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초 신탁금을 신탁원본으로 하고,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추기수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탁원본에 기산하고, 제13조의 규정에서 정한 신탁금의 지급, 제18조의 규정에서 정한 신탁의 중도해지, 제21조의 규정에서 정한 신탁의 종료 및 제23조의 규정에서 정한 신탁자산의 반환이 있을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신탁자산에서 차감합니다.

제15조 (신탁자산의 표시)

신탁자산에 대해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유자산과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신탁자산임을 표기합니다.

제16조 (세금, 사무비용)

신탁자산과 관련된 세금,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은 신탁자산에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신탁자산의 부족으로 인해 세금 및 기타 사무비용 등의 징수가 불가한 경우 수탁자는 유트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17조 (자산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구합니다.

제18조 (중도해지)

-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피신 또는 폐업된 경우
 2. 사용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하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③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1개월 이전에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⑤ 재정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일반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 ⑥ 이 계약이 중도해지되었을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자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자산을 매각하여 기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⑦ 중도해지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제13조 제7항을 준용합니다.

제19조 (수탁자의 시임)

- ① 수탁자는 수탁행위에 관하여 특별한 정회가 있는 한 위탁자와 신탁관리인의 승낙없이 수탁자의 지위를 사임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습니다.
- ③ 수탁자가 사임하는 경우 위탁자는 새로운 수탁자를 선임합니다. 다만, 위탁자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수탁자는 새로운 수탁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수탁자가 사임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신탁관리인의 입회하여 신탁자산을 새로운 수탁자(또는 자산관리기관)에게 이전하고 사무의 인계를 합니다. 다만, 수탁자의 사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0조 (계약이전)

-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산 관리계약으로 이전(이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을 사용자가 자정하는 계좌로 적립금을 지급하고 관련 사무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의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지급기일 내에 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할 적립금의 제4항에 따라 계산된 자연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 신탁금 지급의 연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제31조 연체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구체적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④ 제3항의 자연보상금은 "정상 처리시 지급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지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제 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대하여 보상합니다.
- ⑤ 제2조제1항제8호의 적립금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1조 (신탁의 종료)

- ①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퇴직 연금 취급 실적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세부 내용은 부속협정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2조 (신탁금 지급의 연기)

천자년, 신탁자산의 매각자연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의 폐쇄, 정지 또는 휴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탁금의 지급이 차단되는 경우 수탁자는 자체 없이 위탁자, 운용관리기관, 신탁자산 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사용가 해소될 때까지 지급 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신탁자산의 반환)

- ①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탁자산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신탁자산이 반환되는 경우 수탁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자산을 차분히 하위탁자에게 금전으로 반환합니다.

제24조 (일부 수의자가 존속하는 경우의 업무 수행)

- ① 위탁자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중도하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의 이전을 신청한 이후에도 이 계약의 수의자가 일부 존속하는 경우 이 신탁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 ② 수탁자는 존속하는 수의자에 대해 제3조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며, 이 신탁이 종료될 때까지 신탁자산과 관련된 세금,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비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는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25조 (계약의 승계)

위탁자는 수탁자와의 합의를 거쳐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자와의 합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26조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

DC형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수탁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사업장의명판및 사용인감날인	(인)
----------------	-----

회사

신한금융투자날인	(인)
----------	-----

신탁관리인주소 :

성명	(인)
----	-----

신탁관리인 ★

주로 근로자 대표로 기재하며, 임원등은
기재불가

제1조 ★★ (수수료의 종류)

수수료(협의불가)

일 평가금액의 금액구간별 수수료율 적용
(제작처적용)

- ※ 수수료 체작률 적용법
적립금 400억 범위 기정 시
- 300억 이하 0.2% 적용
- 100억은 0.15% 적용

계약 2년차~4년차 10% 할인
계약 5년차~10년차 13% 할인
계약 11년차 이상 15% 할인 적용
단, 타사에서 이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제도 최초 도입일로부터 가산
가입자부담금 적립금 수수료면제

제2조 ★★★

(수수료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

계약 신청서 상에 명시된 납입주기 및
납입방법으로 처리

- 1) 납입주기
- 결산일기준: 회계결산월기준
- 응당일기준: 최초입금일기준
※ 결산일 12월: 1/1~12/31
응당일 4/1(입금): 4/1~3/31

- 2) 납입방법
- 사용자부담금: 회사가 별도 납부
- 기업자부담금: 기업자 자산부담
기입자 부담금의 경우 규약에 명시된
규정에 따름

- 3) ⑥ 원금보장상품의 경우
원금 100% 미도 수익증권의 경우
원금 105% 미도

[2022. 4. 29. 개정]

2. 중도해지수수료(계약서 제18조) : 없음
3. 계약이전수수료(계약서 제20조) : 없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신탁자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5. 제1호를 적용할 때 기입자부담금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를 기입자부담금에 있어 경우, 사용자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사용자부담금으로 구성된 신탁자산평가액 평균잔액으로 하고 기입자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기입자부담금으로 구성된 신탁자산평가액 평균잔액으로 하며, 해당 신탁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적용할 자산관리수수료율은 전체 신탁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해당하는 자산관리수수료율을 체작 적용 합니다.

- ② 제1항 1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경과년수	할인율
2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10%
5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	15%
11차년도 이후	20%

- 주) 1. 경과년수 산출은 최초부담금 납입일로부터 기산합니다.
2. 단, 본 계약서 체결 이전에 이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도시행 경과년수를 적용합니다.
3. 제도시행 경과년수 산출은 퇴직연금 규약상 명시된 제도시행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단, 사용자가 회사와 이 제도 외에 추가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초기되는 제도의 경과년수 산출은 이 제도 최초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기산합니다)
4.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개인형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시행일이 규약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도시행일이 명시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접수된 날의 익영일로부터 제도시행 경과년수를 적용합니다.

- ③ 제2항의 할인율은 본 계약서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 ④ 제1항 제1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업우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기업우대 할인율은 제2항의 계약연기별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하며, 기업우대 할인율 간 중복 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 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된 사용자는, 회사가 사업자 등록번호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일 또는 미증정 공고일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접수된 날의 익영일로부터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일로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속협정서

기업명 기재

(이하 "위탁자"라 합니다)와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퇴직연금사업자 등록번호 제 05-030-2호 이하 "수탁자"라 합니다)는 위탁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에 신고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기초하여 []년 []월 []일에 체결한 자산관리신탁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

제1조 (수수료의 종류)

- 계약서 제17조, 제18조,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관리수수료(계약서 제17조)

- 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수수료는 신탁자산평가액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의율을 체작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신탁자산평가액 평균금액	수수료율	비고(체작 적용 예시)
100억원 이하	0.20%	적립금 1,000억 기정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0.16%	100억×0.20% (200억-100억)×0.16%
2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14%	+ (500억-200억)×0.14%
500억원 초과	0.10%	+ (1,000억-500억)×0.10%

- 나. 가목에서 기입자 부담금 적립금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를 기입자부담기준으로 연금구역에서 정한 경우 해당 수수료는 기입자 신탁자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구 합니다. 단, 2010년 4월 30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는 신탁자산평가액에서 기입자부담금 납입원금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다. 단, 나목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사용자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을 모두 체결한 기업자의 부담금 적립금에 대한 자산관리 수수료는 면제 합니다.

- 제2항의 기업우대 할인율은 본 계약서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제2조 (수수료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

① 제1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별 부담주체 및 납입시기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수수료 명칭	납입주체	납입시기
자산관리수수료	위탁자 또는 수익자	계약 체결일 또는 매사 입연도 말기준 1월이내
중도해지수수료	위탁자	중도해지 시별도 납부
계약이전수수료	위탁자	계약 이전 시별도 납부

②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수수료 납입기일 전 10일 이내에 수수료 내역을 통지하고 납입안내를 하여야 합니다. 납입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합니다. 단, 중도해지 수수료 및 계약이전수수료의 경우 정통이 있는 경우 신트자산에서 차감합니다.

1. 위탁자가 수탁자에 따라 별도 지정하는 계좌에 금전으로 수수료를 납입하는 방법
2. 위탁자의 신트자산에서 차감하여 납입하는 방법 (매 수수료 납입기일 기준 징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일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일 계약서 제21조에 의한 신트종료의 경우에는 신트종료일에 자산보관수수료를 취득합니다. 이때 자산보관수수료의 계약기간은 계약일 또는 직접 자산관리수수료 계약기준일 약일로부터 해당 자산관리수수료 계약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④ 이 경우에 별도의 정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자는 수탁자에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납입을 독촉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징수를 위해 자산 매도 후 결제금액을 수수료에充当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자산에서 차감하는 경우 현금성자산이 있으면 여기서 우선취득하고 현금성자산이 부족한 경우 부족금액의 105/100에 상당하는 신트자산을 매각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수수료 징수를 위한 신트자산 매각 순서)

수탁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신트자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신트자산을 매각합니다. 다만, 시장에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매각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1. 현금성자산(불행어음, 보통예금, 흐름조건부채권매수계약 등)
2. 흐름조건부채권 매수계약(낮은 금리 우선자산, 동순우일 경우 매수일자 우선자산)
3. 국내집합투자증권(IVF) 중 매수일자 우선자산
4. 국내집합투자증권(증권형) 중 매수일자 우선자산
5. 국내집합투자증권(주식형) 중 매수일자 우선자산
6. 국내집합투자증권(주식형) 중 매수일자 우선자산
7. 해외집합투자증권(증권형, 흐름형, 주식형 순서) 중 매수일자 우선자산
8. 정기예금, 적금(낮은 금리 우선자산, 동순우일 경우 매수일자 우선자산)
9. 실물유니증권(주식 또는 차관)
10. 파생결합증권(낮은 금리 우선자산, 동순우일 경우 매수일자 우선자산)
11. GIC(낮은 금리 우선자산, 동순우일 경우 매수일자 우선자산)

제4조 (운용자시가 없는 현금자산 등의 운용)

계약서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기종이자금 및 수수료 자산차감에 따라 발생하는 잔여자금에 대하여는 불행어음, 흐름조건부채권매수계약, 보통예금 순으로 운용합니다.

제5조 (신트금의 지급기일 및 반환기일)

- ① 계약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신트금의 지급기일 및 계약서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신트금의 반환기일은 운영별별환매일정을 감안하여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별별환매일정 또는 반환기일이 하 "지급기일등"이라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최종지급기일 등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최종지급기일 등이 전에 현금화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제1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 (부속협정서 내용의 변경)

위탁자와 수탁자가 필요에 의해 이미 합의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부속협정서의 내용은 새로 체결되는 부속협정서의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사용자

사업장의 명판 및 사용인감 날인

(인)

회사

신한금융투자날인

(인)

신탁관리인 ★

주로 근로자 대표로 기자하며, 임원들은 기재불가

[2022. 4. 29. 개정]

★
신탁관리인주소 :

성명

(인)

제7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보관)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부속협정서를 3부 작성한 후 위탁자와 수탁자 및 신탁관리인이 기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